

# 「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매뉴얼(안)」 우리 협회 검토(안)

	매뉴얼(안)	검토(안)	사유	비고
p5	6)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-관리자는 <u>중대한 결함</u> 이 있는 경우~	6)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-관리자는 ' <u>중대한 결함*</u> '이나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이 있는 경우~  * '중대한 결함'이란 건축물의 기둥, 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 손실로서 다음사항을 말한다. ①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② 주요 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③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④ 누수, 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	점검자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' <u>중대한 결함</u> '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 (「시설물 안전법」 시행령 제18조 참조)	
p6	2.3.1 점검원칙 3) ~ 필요시 구조분야 관계전문가로부터~	2.3.1 점검원칙 3) ~ 필요시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로부터~	경우에 따라 구조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반, 구조, 설비, 전기 등의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.	